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http://www.kats.go.kr

'10년 9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인수 과장, 박용균 연구사 (509-7231)

「추석」 명절,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기표원, 9.13~9.23 16개 시·도 합동 특별점검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 작년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7,86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191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내림.

□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10년 추석대비 계량기 특별점검 실시계획

Ⅰ. 실시 목적

○ 민속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일반생활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함

Ⅱ. 점검 개요

1. 점검기관

○ 시·도지사(전국 278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

2. 점검일정

○ 2010. 9.13～ 9.23(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일정 조정 가능)

※ 추석 : 2010. 9. 22

3. 점검대상 계량기 및 대상업소

○ 대상계량기(상거래용 저울에 한함)

-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 대상업소

-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시장 등

4. 주요 점검내용

○ 변조여부 및 봉인상태(접시지시저울 및 요금표시 전기식지시저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영점 조정상태

○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

Ⅲ. 점검요령

1. 점검방법

○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사용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유도

○ 시·도별 실정에 따라 가능한 시·군·구간 계량검사공무원의 교차점검 실시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는 중점단속실시

○ 부정계량기는「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계량기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업소에서 단속시 불법계량기를 숨겨 둘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의 계량기를 파악한 후 점검을 실시

2. 확인요령

○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2003년 1월1일 이후 검정 제품으로 요금이 표시되는 저울)은 봉인이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 저울추의 바닥을 깎거나 쇠붙이를 붙였는지 여부

○ 검정실시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중 최대용량 2kg 이하로서 "가정용"이라고 표기된 것은 검정대상 계량기가 아니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확인
-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 말 등의 사용 여부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 2005. 1. 1일 이전 검정 계량기 〉

계량기명	구분		검정공차	사용공차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최대용량중 1/4이하		0.5눈금	1눈금
	최대용량중 1/4초과		1눈금	2눈금
판수동저울	최대용량중 1/2이하		0.5눈금	1눈금
	최대용량중 1/2초과		1눈금	2눈금
전기식지시저울	30kg이하	최대용량중 1/4이하 최대중량중 1/4초과	1눈금 1.5눈금	2눈금 3눈금
	30kg초과	최대용량중 1/2이하 최대용량중 1/2초과	1눈금 1.5눈금	2눈금 3눈금

〈 2005. 1. 1일 이후 검정 계량기〉

등급 분류	구분	검정공차	사용공차
3등급 저울	500 눈금 이하	0.5눈금	1눈금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1눈금	2눈금
	2,000눈금 초과 10,000눈금 이하	1.5눈금	3눈금
4등급 저울	50눈금 이하	0.5눈금	1눈금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	1눈금	2눈금
	200눈금 초과 1,000눈금 이하	1.5눈금	3눈금

3.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구 분	관련규정
고 발	○ 검정 미필(제작·수리업자)	계량에관한법률 제46조 제4호
	○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 제46조 제3호
	○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및 동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제47조 제1호 및 제2호
	○ 계량기가 아닌것 또는 다음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것 -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 -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은 것 및 변조 된 것 - 검정을 받지 않은 것 -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 제47조 제4호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봉인을 훼손한 자	" 제47조 제5호
	○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 제47조 제6호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48조 제1호
	○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 제48조 제3호
과태료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51조 제1항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제51조 제2항
보완지시	○ 유리파손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사항	